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741호 2023. 3. 27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2호 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————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4호 영화,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안) ————— 50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(변경) ————— 55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52호

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 032-560-6874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3. 3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

2. 위치

-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9-5, -10번지

3. 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 없음)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·당하동 일원	948,480.9	-	948,480.9	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1)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(㎡)			구 성 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948,480.9	-	948,480.9	100.0	
주거지역	859,759.8	-	859,759.8	9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286,607.6	-	286,607.6	3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	189,904.7	-	189,904.7	20.0	
제3종일반주거지역	383,247.5	-	383,247.5	40.0	
일반상업지역	88,721.1	-	88,721.1	10.0	

2)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가) 교통시설 (변경없음)

① 도로 결정조서

등급	규 모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광로	3	23	40	주간선 도로	1,030 (총 9,095)	동측 지구계	광로 3-25	일반 도로		'98.6.12	
소계	3	1개노선		-	1,030	-	-	-			
중로	1	116	20	집산도로	228 (총 1,366)	광로 3-24	중로 1-120	일반 도로		'98.6.12	
중로	1	120	20	보조간선 도로	1,330 (총 4,290)	대로 2-61	대로 3-58	일반 도로		'98.6.12	버스 베이 설치
중로	1	127	20	집산도로	488	광로 3-23	중로 1-120	일반 도로		'99.6.23	
중로	1	128	20	집산도로	499	광로 3-23	중로 1-120	일반 도로		'99.6.23	
소계	1	4개노선		-	2,545	-	-	-			
중로	2	173	17	집산도로	462	중로 1-120	중로 1-127	일반 도로		'99.6.23	
중로	2	174	17	집산도로	545	중로 1-120	중로 1-128	일반 도로		'99.6.23	
소계	2	2개노선		-	1,007	-	-	-			
중로	3	107	12	집산도로	779	광로3-23	중로1-120	일반 도로		'99.6.23	
중로	3	108	12	집산도로	322	중로 3-107	소로 3-38	일반 도로		'99.6.23	
중로	3	111	12	집산도로	483	광로 3-23	중로2-174	일반 도로		'99.6.23	
중로	3	112	12	집산도로	191	중로 1-120	소로 2-41	일반 도로		'99.6.23	

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계	3	4개노선		-	1,775	-	-	-			
소로	1	1	10	국지도로	604	중로 1-116	중로 1-120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1	2	10	국지도로	421	중로 1-127	중로 1-127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1	3	10	국지도로	313	광로 3-23	중로 1-127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1	4	10	국지도로	357	중로 3-107	중로 3-108	일반 도로		'01.8.30	
소로	1	5	10	국지도로	143	소로 1-4	소로 1-6	일반 도로		'01.8.30	
소로	1	6	10	국지도로	116	중로 3-107	소로 1-4	일반 도로		'01.8.30	
소로	1	7	10	국지도로	105	중로 1-120	중로 3-107	일반 도로		'01.8.30	
소로	1	8	10	국지도로	132	중로 3-108	소로 1-6	일반 도로		'01.8.30	
소로	1	9	10	국지도로	89	소로 1-8	소로 1-4	일반 도로		'01.8.30	
소로	1	10	10	국지도로	113	중로 3-108	소로 1-4	일반 도로		'01.8.30	
소로	1	11	10	국지도로	417	중로 1-128	중로 1-128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1	12	10	국지도로	55	중로 1-128	소로 1-11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1	12개노선			2,865	-	-				
소로	2	1	8	국지도로	158	중로 1-120	소로 1-1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2	8	국지도로	353	소로 1-1	소로 2-1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3	8	국지도로	27	중로1-120	소로3-4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4	8	국지도로	58	소로 1-1	- (원당동 656-21)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5	8	국지도로	37	소로 2-1	소로 3-8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6	8	국지도로	49	소로 2-1	소로 3-9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7	8	국지도로	225	중로 2-173	- (원당동 790)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8	8	국지도로	93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9	8	국지도로	92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10	8	국지도로	93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11	8	국지도로	102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12	8	국지도로	100	소로 2-11	소로 1-3	일반 도로		'99.6.23	
소로	2	13	8	국지도로	289	소로 1-4	소로 1-3	일반 도로		'99.6.23	

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2	14	8	국지도로	74	소로 2-13	소로 1-3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15	8	국지도로	41	소로 1-3	소로2-17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16	8	국지도로	120	소로 2-17	소로 2-17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17	8	국지도로	315	소로 1-3	소로2-17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18	8	국지도로	609	소로 2-18	소로 2-18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19	8	국지도로	23	중로 1-120	소로 2-18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20	8	국지도로	35	중로 3-107	소로 2-18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21	8	국지도로	14	중로 3-107	동측 지구계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22	8	국지도로	190	중로 3-107	소로 1-8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23	8	국지도로	56	중로 3-107	소로 2-22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24	8	국지도로	49	소로 2-22	소로 3-32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25	8	국지도로	118	소로 1-4	소로 1-6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26	8	국지도로	82	소로 1-8	소로 1-4	일반 도로		‘01.8.30	
소로	2	27	8	국지도로	328	소로 1-8	소로 2-27	일반 도로		‘01.8.30	
소로	2	28	8	국지도로	55	소로 2-27	소로 2-27	일반 도로		‘01.8.30	
소로	2	29	8	국지도로	37	중로 3-107	소로 2-27	일반 도로		‘01.8.30	
소로	2	30	8	국지도로	8	중로 3-107	- (원당동 778-11)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1	8	국지도로	24	중로 3-107	- (원당동 778)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2	8	국지도로	9	중로 3-107	- (원당동 561)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3	8	국지도로	216	중로 3-107	소로 2-33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4	8	국지도로	41	중로 3-111	소로 2-35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5	8	국지도로	331	중로 3-111	소로 2-35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6	8	국지도로	368	중로 3-111	중로 3-111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7	8	국지도로	85	소로 2-38	소로 2-36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8	8	국지도로	103	소로 2-36	소로 2-36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39	8	국지도로	179	광로 3-23	소로 2-40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0	8	국지도로	134	중로 1-120	소로 2-39	일반 도로		‘99.6.23	

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2	41	8	국지도로	291	소로 2-47	- (당하동 984-2)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2	8	국지도로	195	중로 3-112	소로 2-48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3	8	국지도로	26	소로 2-42	남측 지구계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4	8	국지도로	90	소로 2-45	소로 2-41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5	8	국지도로	204	소로 2-41	- (당하동 325)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6	8	국지도로	161	소로 2-41	소로 2-47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7	8	국지도로	174	소로 2-45	소로 2-48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2	48	8	국지도로	463	소로 2-41	소로 2-47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계	2	48개노선		-	6,924	-	-	-			
소로	3	1	6	국지도로	147	소로 2-1	소로 2-2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	6	국지도로	37	소로 1-1	소로 3-1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3	3	6	국지도로	99	소로 2-2	소로 3-4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	6	국지도로	268	소로 2-2	소로 2-2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	4	국지도로	72	소로 2-2	소로 3-4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3	6	6	국지도로	46	소로 1-1	소로 2-2	일반 도로		‘99.6.23	
소로	3	7	3	특수도로	13	중로 1-116	소로 2-4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8	3	특수도로	11	중로 1-116	소로 2-5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9	3	특수도로	16	중로 1-116	소로 2-6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0	3	특수도로	368	소로 1-1	소로 2-4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1	3	특수도로	15	소로 1-1	소로 3-10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2	3	특수도로	18	중로 1-1	소로 3-10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3	3	특수도로	29	중로 1-120	소로 3-3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4	3	특수도로	40	중로 1-120	소로 3-4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5	3	특수도로	153	소로 1-1	소로 1-1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6	3	특수도로	216	소로 1-1	중로 2-173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7	3	특수도로	303	소로 2-7	소로 3-16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18	3	특수도로	36	소로 2-13	소로2-13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
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3	19	3	특수도로	30	광로 3-23	소로 2-14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0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소로 2-17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1	3	특수도로	7	광로 3-23	소로 2-17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2	3	특수도로	155	중로 1-127	중로 2-173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3	4	특수도로	35	광로 3-23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4	4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5	4	특수도로	35	광로 3-23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6	2	특수도로	295	소로 2-21	북측 지구계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7	3	특수도로	40	소로 2-18	소로 2-18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8	3	특수도로	36	소로 3-27	소로 3-26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29	3	특수도로	23	중로 1-120	소로 2-18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30	3	특수도로	20	중로 1-120	소로 2-22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31	3	특수도로	20	중로 1-120	소로 2-22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32	3	특수도로	16	중로 3-107	소로 2-24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33	3	특수도로	26	중로 3-107	소로 1-5	보행자 전용도로		‘01.8.30	
소로	3	34	3	특수도로	33	소로 1-5	소로 2-25	보행자 전용도로		‘01.8.30	
소로	3	35	3	특수도로	26	중로 3-107	소로 1-8	보행자 전용도로		‘01.8.30	
소로	3	36	3	특수도로	43	중로 3-107	소로 2-27	보행자 전용도로		‘01.8.30	
소로	3	37	3	특수도로	23	중로 1-120	소로 2-27	보행자 전용도로		‘01.8.30	
소로	3	38	3	특수도로	580	중로 3-107	중로 3-108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39	6	특수도로	30	중로 3-107	- (원당동 566)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0	6	특수도로	15	중로 1-120	- (원당동 568-6)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1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- (원당동 565)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2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- (원당동 562)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3	3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2-33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4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소로 2-35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5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- (당하동 13-2)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
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3	46	4	특수도로	201	중로 1-128	중로 3-111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7	3	특수도로	229	소로 2-35	소로 2-36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8	3	특수도로	18	소로 2-36	소로 3-47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49	4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1-11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0	4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1-11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1	4	특수도로	35	광로 3-23	소로 1-11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2	4	특수도로	229	중로 1-128	중로 2-174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3	3	특수도로	23	중로 1-120	소로 2-39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4	3	특수도로	170	소로 2-40	소로 2-41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5	3	특수도로	57	중로 3-112	소로 2-42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6	3	특수도로	33	소로 2-48	소로 2-46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7	3	특수도로	34	소로 2-48	소로 2-47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로	3	58	4	특수도로	55	중로 1-127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‘99.6.23	
소계	3	58개노선		-	4,637	-	-	-			

주) ()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

② 주차장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-	-	-	4,229.2	-	4,229.2	-	
기정	2	주차장	원당동 825-8	1,409.1	-	1,409.1	‘99.06.23.	
기정	3	주차장	당하동 1029-1	1,411.3	-	1,411.3	‘99.06.23.	
기정	4	주차장	당하동 1030-6	1,408.2	-	1,408.2	‘99.06.23.	

나) 공간시설 (변경없음)

①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44,932.5	-	
기정	1	공원	근린공원	원당동 811-2	18,321.3	‘99.6.23.	
기정	2	공원	근린공원	원당동 824-11	10,226.9	‘99.6.23.	
기정	3	공원	근린공원	원당동 849	11,114.7	‘01.8.30.	
기정	4	공원	어린이공원	원당동 805-3	2,949.5	‘99.6.23.	
기정	5	공원	어린이공원	당하동 1041	2,320.1	‘00.6.26.	

② 녹지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13,933.1	-	
소계	-	-	-	-	9,162.4	-	완충녹지
기정	1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11-9	388.2	ˆ 99.6.23.	
기정	2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20-2	418.0	ˆ 99.6.23.	
기정	3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20-3	1,147.2	ˆ 99.6.23.	
기정	4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20-4	106.0	ˆ 99.6.23.	
기정	5	녹지	완충녹지	당하동 1019-1	913.6	ˆ 99.6.23.	
기정	6	녹지	완충녹지	당하동 1027-1	928.5	ˆ 99.6.23.	
기정	7	녹지	완충녹지	당하동 1027-2	838.9	ˆ 99.6.23.	
기정	8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54-11	374.8	ˆ 99.6.23.	
기정	9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54-10	801.1	ˆ 99.6.23.	
기정	10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54-9	942.4	ˆ 99.6.23.	
기정	11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55-3	170.3	ˆ 99.6.23.	
기정	12	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858	539.0	ˆ 99.6.23.	
기정	13	녹지	완충녹지	당하동 1033-6	675.4	ˆ 99.6.23.	
기정	14	녹지	완충녹지	당하동 1035	919.0	ˆ 99.6.23.	
소계	-	-	-	-	4,770.7	-	경관녹지
기정	15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795-1	114.7	ˆ 99.6.23.	
기정	16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01	1,196.9	ˆ 99.6.23.	
기정	17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40-6	986.6	ˆ 99.6.23.	
기정	18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54-13	298.1	ˆ 99.6.23.	
기정	19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54-6	107.7	ˆ 99.6.23.	
기정	20	녹지	경관녹지	당하동 1036-2	207.1	ˆ 00.6.26.	
기정	21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87-2	479.7	ˆ 10.10.4.	
기정	22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87-1	98.2	ˆ 10.10.4.	
기정	23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53-5	523.0	ˆ 10.10.4.	
기정	24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57-1	111.3	ˆ 10.10.4.	
기정	25	녹지	경관녹지	당하동 1037-5	59.2	ˆ 10.10.4.	
기정	26	녹지	경관녹지	당하동 1037-6	143.0	ˆ 10.10.4.	
기정	27	녹지	경관녹지	당하동 1061-1	142.0	ˆ 10.10.4.	
기정	28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10-14	303.2	ˆ 10.10.4.	

③ 공공공지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1,436.9	-	
기정	1	공공공지	원당동 873	884.7	ˆ 10.10.4.	
기정	2	공공공지	원당동 836-4	379.1	ˆ 10.10.4.	
기정	3	공공공지	원당동 849-1	119.8	ˆ 10.10.4.	
기정	4	공공공지	원당동 857-2	53.3	ˆ 10.10.4.	

다) 공공·문화체육시설 (변경없음)

① 학교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57,715.8	-	
기정	1	학 교	고등학교	원당동 852-3	12,053.0	ˆ 99.6.23.	
기정	2	학 교	중학교	원당동 852-2	11,419.5	ˆ 99.6.23.	
기정	3	학 교	초등학교	원당동 809	12,215.1	ˆ 99.6.23.	
기정	4	학 교	초등학교	당하동 1022	11,247.3	ˆ 99.6.23.	
기정	5	학 교	초등학교	당하동 1038-1	10,780.9	ˆ 00.6.26.	

② 공공청사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5,368.6	-	
기정	1	공공청사	동사무소	원당동 853-1	1,990.1	ˆ 99.6.23.	
기정	2	공공청사	우체국	원당동 823-2	1,264.9	ˆ 99.6.23.	
기정	3	공공청사	파출소	원당동 854-1	970.3	ˆ 99.6.23.	
기정	4	공공청사	소방파출소	원당동 854-2	1,143.3	ˆ 99.6.23.	

③ 체육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2,270.8	-	
기정	1	체육시설	복합체육관	원당동 825-1	1,409.5	ˆ 19.12.30.	
기정	2	체육시설	게이트볼장	원당동 850-2	861.3	ˆ 20.07.20.	

라) 방재시설 (변경없음)

① 하천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하천	하천	원당동 851-4	5,150.3	ˆ 99.6.23.	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① 단독주택용지(A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1	1-1	615.7	1	387.5	
			2	228.2	
	2	893.4	1	316.4	
			2-1	270.2	
			2-2	306.8	
	3	2,215.2	1	369.2	
			1-2	369.2	
			1-3	369.2	
			1-4	369.2	
			1-5	369.2	
			1-6	369.2	
	4	2,079.9	1-1	440	-
			1-2	465.4	-
			2-1	273.0	-
			2-2	315.0	-
			2-3	586.5	-
	9	5,198.9	1	485.9	-
			2	1,262.8	-
			3-1	298.1	-
			3-2	299.5	-
			3-3	298.2	-
			3-4	299.7	-
			4-1	293.0	-
			4-2	275.0	-
			4-3	337.0	-
			4-4	319.0	-
			4-5	276.1	-
			4-6	275.0	-
			5	479.6	-
	10	4,312.3	1-1	922.8	-
			1-2	664.0	-
			2-1	340.5	-
			2-2	340.5	-
			3	381.4	-
			4-1	275.7	-
			4-2	310.9	-
			5	677.0	-
			6	399.5	-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	11	2,521.8	1	1,629.3	-
			2	447.8	-
			3	444.7	-
	14	2,138.9	1	605.3	-
			2	306.1	-
			3	347.3	-
			4	291.5	-
			5	182.1	-
			6	406.6	-
	15	3,058.0	1	595.9	-
			2-1	733.7	-
			2-2	463.2	-
			3	432.3	-
			4-1	277.5	-
			4-2	277.6	-
			4-3	277.8	-
	21	5,282.4	1	389.3	-
			2	389.6	-
			3-1	349.8	-
			3-2	656.6	-
			3-3	570.0	-
			4	612.5	-
			5	566.1	-
			6	335.5	-
			7-1	352.5	-
			7-2	330.8	-
			7-3	330.6	-
			8	399.1	-
	22	2,138.6	1	369.4	-
			2	470.1	-
			3	692.8	-
			4	288.3	-
			5	318.0	-
	23-1	1,271.7	1	674.6	-
			2	597.1	-
	23-2	1,287.4	4-1	415.0	-
			4-2	397.8	-
			4-3	474.6	-
	27	5,560.6	1	603.6	-
			2	412.4	-
			3-1	387.8	-
			3-2	379.7	-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			3-3	379.7	-
			3-4-1	324.8	-
			3-4-2	324.7	-
			3-4-3	324.7	-
			3-4-4	334.0	-
			3-4-5	334.0	-
			3-4-6	334.1	-
			4	198.1	-
			5	549.4	-
			6-1	231.2	-
			6-2	442.4	-
	54-1	1,483.3	1-1	317.6	-
			1-2	741.6	-
			1-3	424.1	-
	54-2	1,258.5	3-1	282.0	
			3-2	231.5	
			3-3	231.4	
			3-4	231.5	
			3-5	282.1	
	55	2,327.8	1	579.2	-
			1-2-1	525.4	-
			1-2-2	305.8	-
			1-2-3	305.8	-
			1-2-4	305.8	-
			1-2-5	305.8	-
	56	1,854.3	1	303.8	
			2-1	311.6	
			2-2	311.6	
			3-1	308.3	
			3-2	308.9	
			3-3	310.1	
	57	1,276.3	1	811.5	-
			2	464.8	-
58-1	769.9	1	769.9	-	
59	3,508.0	1-1	291.8		
		1-2	291.8		
		2-1	253.3		
		2-2	258.4		
		2-3	297.5		
		2-4	301.6		
		2-5	304.7		
		2-6	300.5		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			2-7	304.6	
			2-8	304.7	
			2-9	301.6	
			2-10	297.5	
	60	3,314.7	1-1-1	247.7	-
			1-1-2	247.7	-
			1-2	495.4	-
			2-1-1	267.1	-
			2-1-2	304.3	-
			2-1-3	300.3	-
			2-1-4	290.2	-
			2-2	389.2	-
			2-2-1	385.3	-
			2-3	387.5	-
			61	3,426.0	1-1-1
	1-1-2	291.0			-
	1-1-3	287.0			-
	1-1-4	296.0			-
	1-2-1	332.0			-
	1-2-2	321.0			-
	1-2-3	316.0			-
	1-2-4	316.0			-
	1-2-5	320.0			-
	1-2-6	337.0			-
	1-2-7	328.0			-
	62	2,099.8	1-1	561.5	-
			1-2-1	294.5	-
			1-2-2	273.8	-
			2-1-2	299.9	-
			2-2	359.9	-
			2-3	310.2	-
	64	2,860.9	1	2,504.1	-
			2	356.8	-
	65-1	815.0	1	815.0	-
	66	5,102.2	1-1	370.0	-
			1-2	422.2	-
			1-3	420.6	-
			1-4	358.9	-
			1-5	356.5	-
			1-6	354.2	-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			1-7	356.2	-
			1-8	385.7	-
			2-1-1	351.7	-
			2-1-2	344.5	-
			2-1-3	346.5	-
			2-1-4	344.2	-
			2-1-5	344.2	-
			2-2	346.8	-
	67	4,750.9	1-1	317.7	
			1-2	317.8	
			1-3	317.8	
			1-4	317.8	
			1-5	317.7	
			1-6	317.8	
			1-7	317.8	
			1-8	317.4	
			2-1	330.6	
			2-2	309.6	
			2-3	309.6	
			2-4	309.5	
			2-5	309.6	
			2-6	309.6	
	2-7	330.6			
	79-2	1,589.6	2-1	359.4	-
			2-2	509.4	-
			3	338.7	-
			4	382.1	-
	81-1	1,907.0	1-1	467.7	-
			1-2	347.2	-
			2-1	298.1	-
			2-2	298.1	-
			2-3	495.9	-
	82	1,500.0	1-1	305.6	
			1-2	274.7	
			1-3	338.0	
			1-4	289.9	
			1-5	291.8	
	83	1,082.4	1-1	541.2	-
			1-2	541.2	-
	86	3,574.6	1	802.4	-
2-1			371.3	-	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			2-2	296.5	-
			2-3-1	334.1	-
			2-3-2	334.9	-
			3-1	356.0	-
			3-2	356.8	-
			3-3	362.4	-
			3-4	360.2	-
	89	1,749.3	1-1	295.4	
			1-2	290.6	
			1-3	290.6	
			1-4	290.7	
			1-5	290.6	
			1-6	291.4	
	90	2,630.4	1	2,630.4	-
	91	4,070.9	1-1	334.6	
			1-2	334.0	
			1-3	332.5	
			1-4	331.1	
			1-5	329.6	
			1-6	367.6	
			1-7	387.2	
			1-8	328.0	
			1-9	328.0	
			1-10	328.0	
			1-11	328.0	
			1-12	342.3	
	92	4,263.4	1-1	243.3	
			1-2	312.9	
			1-3	312.9	
			1-4	312.9	
			1-5	313.1	
			1-6	313.1	
			1-7	313.1	
			1-8	268.0	
			1-9	290.2	
			1-10	340.1	
			1-11	294.1	
			1-12	313.9	
			1-13	314.9	
			1-14	320.9	

② 단독주택용지(A-2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2	5	2,348.8	1	219.5	
			2-1	663.8	
			2-2	562.4	
			3	639.7	
			4	263.4	
	24	2,744.7	1-1	169.9	
			1-2	396.7	
			1-3	383.3	
			2	832.9	-
			3-1	455.4	
			3-2	506.5	-
	63	3,526.9	1-1	1,182.7	-
			2-1	431.6	
			2-2	416.6	
			2-3	338.3	
			3-1	374.3	
			3-2	231.4	
			4-1	261.0	
	68-1	1,748.2	1	385.9	
			2	423.0	
			3-2	335.7	
			4-1	301.9	
			4-2	301.7	
	77-1	4,438.9	1	292.0	
			2	3,065.8	-
			3-1	401.5	
			3-2	385.6	
			3-2-1	294.0	
	80-2	643.6	10	643.6	-
	85-1	881.5	2-1	292.5	
2-2			309.0		
2-3			280.0		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2	87	2,658.8	1-1	346.7	
			1-2	330.5	
			1-3	330.6	
			1-4	346.8	
			2	309.7	
			3	296.3	
			4-1	368.2	
			4-2	330.0	
	103-1	1,794.7	1	660.0	
			2-1	284.5	
			2-2	284.5	
			2-3	284.5	
			2-4	281.2	
	104	1,456.0	1	663.3	-
			2	792.7	-
	105	2,018.6	1	344.9	
			2	302.3	
			3	540.1	-
			4	831.3	-
	107-1	664.8	1	664.8	
	108-2	1,113.7	1	280.4	
			2	833.3	-

③ 단독주택용지(A-3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3	7	3,332.3	1-1	347.0	
			1-2	346.9	
			1-3	330.4	
			1-4	330.3	
			2-1	362.2	
			2-2	346.5	
			2-3	258.6	
			3-1	350.6	
			3-2	659.8	-
	8-1	3,063.0	1	905.3	-
			2-1	328.3	-
			2-2	332.4	-
			3	521.8	
			4	203.0	
			5	772.2	-
	12	2,888.3	1	660.4	-
			2	638.7	-
			3	467.8	
			4-1	330.7	
			4-2	330.7	
			4-3	460.0	
	13	1,296.3	1	158.8	
			2	227.2	
			3	910.3	-
	16	3,824.4	1-1	283.3	-
			1-2	256.5	-
			1-3	256.1	-
			2-1	296.5	-
			2-2	296.4	-
			3	314.1	
			4-1	367.4	-
			4-2	367.3	-
			5-1-1	277.3	-
			5-1-2	277.3	-
			5-1-3	277.5	-
			5-2	277.4	
			5-3	277.3	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3	17-1	5,298.3	1	1,108.5	-
			2	239.9	
			3-1	304.2	
			3-2	330.6	
			3-3-1	331.7	-
			3-3-2	331.6	-
			4-1	275.5	-
			4-2	866.5	-
			5	715.8	-
			6	794.0	-
	30	1,519.7	1	589.6	-
			2-1	304.5	
			2-2	625.6	-
	31	1,116.4	1-1	279.0	
			1-2	279.1	
			1-3	279.1	
			1-4	279.2	
	32	3,141.7	1-1	257.7	
			1-2	257.8	
			1-3	280.0	
			1-4	661.0	-
			1-5	262.0	
			2-1	845.9	-
	33	1,949.7	2-2	577.3	-
			1	1,551.1	-
			2	231.9	
	34	2,243.5	3	166.7	
			1-1	330.5	
			1-2	330.5	
			1-3	330.5	
			1-4	307.0	
			2-1	688.1	
	35-1	1,104.3	2-2	256.9	
			1-1	422.3	-
			1-2	276.8	-
	36-1	1,366.5	2	405.2	
			1-1	244.2	-
			1-2	244.2	-
			1-3	284.3	-
			1-4	330.0	-
			2	263.8	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3	37-1	1,486.2	1	336.4	
			2-1	332.6	-
			2-2	314.3	-
			3	502.9	-
	38	2,020.7	1-1	336.5	
			1-2	336.4	
			1-3	495.3	-
			2-1	284.1	-
			2-2	284.2	-
			2-3	284.2	-
	39	2,210.2	1	193.4	
			2	429.0	
			3	176.8	
			4-1	329.3	-
			4-2	329.3	-
			5-1	376.2	
			5-2	376.2	
	40	3,274.6	1	2,228.7	-
			2-1	550.0	-
			2-2	495.9	-
	42	4,256.5	1	705.4	-
			2	878.4	-
			3	1,017.0	-
			4	779.2	-
			5-1	397.0	
			5-2	285.8	
			6	193.7	
	43	1,626.9	1-1	267.1	
			1-2	234.6	
			1-3	273.9	
			1-4	572.0	-
			1-5	279.3	
	44	2,134.3	1-1	337.1	-
1-2			337.0		
2-1			431.8		
2-2			297.6		
2-3-1			350.0	-	
2-3-2			380.8	-	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3	47-1	1,658.7	1-1	256.7	
			1-2	256.4	
			1-3	256.3	
			1-4	256.3	
			2	633.0	-
	49	2,890.8	1-1	567.0	-
			1-2	603.6	-
			1-3	200.0	
			2	377.4	
			3-1	942.0	-
			3-2	200.8	
	50	3,162.7	1	438.1	-
			2	211.1	
			3	368.5	
			4-1	266.5	-
			4-2	266.5	-
			5	386.6	
			6-1	330.6	-
			6-2	302.8	-
			7	353.4	
8	238.6				
52-1	1,907.7	1	1,907.7	-	

④ 단독주택용지(A-4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A-4	6	2,107.7	1	406.8	
			2	953.9	-
			3	747.0	-
	25	1,810.2	1	572.5	-
			2	572.5	-
			3	665.2	-
	29	2,625.8	1-1-1	531.3	
			1-1-2	531.3	
			1-2-1	531.2	-
			1-2-2	531.1	-
			2	500.9	
	45	1,830.2	1-1-1-1	279.8	
			1-1-1-2	296.9	
			1-1-1-3	306.0	
			1-1-2	572.3	-
			1-2	375.2	
	46-1	2,448.1	1	248.8	
			2	514.5	-
			3-1	247.4	
			3-2	297.5	
			3-3	200.0	
			4-1	470.0	
			4-2	469.9	
	48-1	987.5	1	987.5	-
	51	3,428.4	1-1	519.4	-
			1-2	519.5	-
			2	764.7	-
			3-1-1	220.4	
			3-1-3	213.0	
			3-2	326.5	
3-3			546.9		
3-4			318.0		

⑤ 다세대/연립주택용지(B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B-1	19	2,499.4	1-1	701.1	
			1-2	718.6	
			1-3	705.7	
			2	374.0	
	20	2,986.3	1-1	807.2	
			1-2	851.9	
			2	1,327.2	
	26	1,919.8	1-1	735.3	
			1-2	703.6	
			2	129.5	
			3	351.4	
	109-2	1,646.9	2-1	338.5	
			2-2	338.7	
			2-3	338.7	
			2-4	366.8	
			3	264.2	
	110	3,682.2	1-1-1	758.0	
			1-1-2	785.5	
			1-2	561.2	
			2-1	350.1	
			2-2	361.3	
			2-3	432.2	
			2-4	433.9	
	111	3,319.4	1	296.9	
			2	272.4	
			3	1,023.6	
			4-1	379.2	
			4-2	349.7	
			4-3	360.7	
			5-1	318.5	
			5-2	318.4	
	112	1,540.9	1-1	394.5	
1-2			376.1		
1-3			376.2		
1-4			394.1		
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B-1	114	3,186.1	1	729.6	
			2	688.9	
			3	537.2	
			4	432.7	
			5	797.7	-
	115	2,398.4	1-1-1	406.9	
			1-1-2	515.9	
			2-1	595.3	
			2-2	880.3	
	116	4,696.2	1-1	371.2	
			1-2	382.1	
			1-3	342.8	
			1-4	361.2	
			2-1	479.2	-
			2-2	479.1	-
			3	395.5	
			4-1	337.7	
			4-2	405.5	
			5-1	383.1	
			5-2	374.7	
			5-3	384.1	
	117	3,483.0	1	780.6	-
			2	711.9	-
			3	630.8	-
			4-1	345.6	
			4-2	333.4	
			4-3	346.8	
			4-4	333.9	
	118	3,836.8	1-1	393.0	
			1-2	392.9	
			1-3	392.9	
			2-1	660.6	
			2-2	653.5	
			3-1-1	330.3	
			3-1-2	332.0	
			3-2-1	341.1	
3-2-2			340.5		
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B-1	119	3,328.3	1	1,769.4	-
			2-1	768.0	
			2-2-1	386.7	
			2-2-2	404.2	
	120	3,038.5	1-1	437.2	
			1-2	732.8	-
			2	630.9	
			3	876.3	
			4	361.3	
	121	2,571.4	1-1	419.2	
			1-2	412.0	
			1-3	640.9	
			1-4	548.1	-
			2-1	287.4	
			2-2	263.8	
	122	1,351.9	1	308.6	
			2	375.1	
			3	506.2	-
			4	162.0	

⑥ 연립주택용지(C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 적(㎡)	
C-1	53-2	14,717.3	10	8,423.2	
			11	6,294.1	

⑦ 아파트용지(D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D-1	53-1	33,415.2	1	520.6	
			2	570.9	
			3	200.2	
			4-1	4,009.6	
			4-2	5,540.6	
			5	3,212.2	
			6	2,643.8	
			7	778.4	
			8	1,084.5	
			9	10,178.2	
	69-1	20,697.3	1	5,891.5	
			2	14,805.8	
	70	28,370.9	1	28,370.9	
	93-1	18,948.9	3	18,386.6	
			8	562.3	
	94	39,757.4	1	30,135.1	
			2	9,622.3	
	101	43,298.5	1	43,298.5	
	102	35,665.9	1	35,665.9	

⑧ 아파트용지(D-2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D-2	78-1	21,077.2	1	21,077.2	
	80-1	13,267.1	3	13,267.1	
	108-1	18,427.1	3	18,427.1	

⑨ 아파트용지(D-2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D-2	46-2	320.0	6	320.0	

⑩ 상업용지(E-1 용도)(변경)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	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				위치	면적(㎡)	
E-1	72-1	4,692.8	2	418.9		E-1	72-1	4,692.8	2	418.9	
			3	582.0					3	582.0	
			4	1,345.7					4	1,345.7	
			5-1	605.6					5-1	605.6	
			5-2	605.5					5-2	605.5	
			5-3	605.5					5-3	605.5	
			6	529.6					6	529.6	
	74-1	4,599.4	1	385.8		E-1	74-1	4,599.4	1	385.8	
			2	972.1					2	972.1	
			3	941.9					3	941.9	
			6	504.1					6	504.1	
			7	787.1					7	787.1	
			8	1,008.4					8	1,008.4	
	97-1	6,922.7	2	412.9		E-1	97-1	6,922.7	2	412.9	
			3	412.8					3	412.8	
			4	443.7					4	443.7	
			5-1	728.6					5	2,192.0	
			5-2	1,463.4					6	761.4	
			6	761.4					7	818.0	
			7	818.0					8	1,315.0	
			8	1,315.0					10	566.9	
			10	566.9							
			99-1	6,254.5	1				659.4		E-1
	2	460.5				2	460.5				
	3-1	771.5				3-1	771.5				
	4-1	622.7				4-1	622.7				
	4-2	612.7				4-2	612.7				
	7	938.6				7	938.6				
8	1,635.1				8	1,635.1					
9	554.0				9	554.0					

- 변경 사유서

가구 번호	기정		변경		변경사유
	위치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
97-1	5-1	728.6	5	2,192.0	○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
	5-2	1,463.4			

⑪ 상업용지(E-2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E-2	71	3,547.9	1	1,825.1	-
			2	1,180.9	
			3	541.9	
	73	3,415.8	1	528.0	
			2	1,891.5	
			3	996.3	
	75	3,988.0	1	533.2	
			2-1	1,051.8	
			2-2	1,051.6	
			3	1,351.4	
	95	3,497.9	1	768.3	
			2	805.4	
			3	1,541.3	
			4	382.9	
	96	4,894.0	1	968.1	
			2	526.2	
			3	838.8	
			4	836.2	
			5	850.6	
			6	874.1	
	98	4,510.0	1	554.1	
2			942.0		
3			524.2		
4			864.6		
5			858.8		
6			766.3		
100	3,445.4	1	938.0		
		2	705.4		
		3	400.6		
		4	651.5		
		5	749.9		

⑫ 학교용지(F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 적(㎡)	
F-1	28	12,215.1	1	12,215.1	초 교
	78-2	11,419.5	2	11,419.5	중 교
	78-3	12,053.0	3	12,053.0	고 교
	88	11,247.3	1	11,247.3	초 교
	109-1	10,780.9	1	10,780.9	초 교

⑬ 공공청사용지(G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 적(㎡)	
G-1	69-2	1,264.9	3	1,264.9	우체국
	79-1	1,990.1	1	1,990.1	동사무소
	80-3	970.3	1	970.3	경찰서
	80-4	1,143.3	2	1,143.3	소방서

⑭ 주차장용지(H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 적(㎡)	
H-1	74-2	1,409.1	5	1,409.1	
	97-2	1,411.3	1	1,411.3	
	99-2	1,408.2	6	1,408.2	

⑮ 체육시설용지(I-1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 적(㎡)	
I-1	72-2	1,409.5	1	1,409.5	

⑯ 체육시설용지(I-2 용도)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 적(㎡)	
I-2	52-2	861.3	2	861.3	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① 단독주택용지(A-1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A-1	1-1, 2, 3, 4, 9, 10, 11, 14, 15, 21, 22, 23-1, 23-2, 27, 54-1, 54-2, 55, 56, 57, 58-1, 59, 60, 61, 62, 64, 65-1, 66, 67, 79-2, 81-1, 82, 83, 86, 89, 90, 91, 92BL	용도	허용용도	○별표1 A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별표1 A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60% 이하	
		용 적 률	○150% 이하	
		높 이	○3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	
		배 치	○별표2의 A	
		형 태	○별표3의 A	
		색 채	○별표4의 A	
		건축한계선	○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	

② 단독주택용지(A-2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A-2	5, 24, 63, 68-1, 77-1, 80-2, 85-1, 87, 103-1, 104,105,107-1, 108-2BL	용도	허용용도	○별표1 A-2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별표1 A-2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60% 이하	
		용 적 률	○180% 이하	
		높 이	○3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	
		배 치	○별표2의 A	
		형 태	○별표3의 A	
		색 채	○별표4의 A	
		건축한계선	○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	

③ 단독주택용지(A-3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	구 분		계 획 내 용
	기정	변경			
A-3	7, 8-1, 12, 13, 16, 17-1, 30, 31, 32, 33, 34, 35-1, 36-1, 37-1, 38, 39, 40, 42, 43, 44, 47-1, 49, 50, 52-1 BL	7, 8-1, 12, 13, 16, 17-1, 30, 31, 32, 33, 34, 35-1, 36-1, 37-1, 38, 39, 40, 42, 43, 44, 47-1, 49, 50, 52-1 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A-3의 허용용도
	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A-3의 불허용도
			건 폐 율	○ 60%이하	
			용 적 률	○ 100%이하	
			높 이	○ 2층 이하	
			배 치	○ 별표2의 A	
			형 태	○ 별표3의 A	
			색 채	○ 별표4의 A	
			건 축 한 계 선	○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	

4) 단독주택용지(A-4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A-4	6, 25, 29, 45, 46-1, 48-1, 51 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A-4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A-4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60%이하	
		용 적 률	○ 120%이하	
		높 이	○ 2층 이하	
		배 치	○ 별표2의 A	
		형 태	○ 별표3의 A	
		색 채	○ 별표4의 A	
		건 축 한 계 선	○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	

⑤ 공동주택용지(B-1: 다세대/연립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B-1	19, 20, 26, 109-2, 110, 111, 112, 114, 115, 116, 117, 118, 119, 120, 121, 122 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 B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 B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60% 이하	
		용 적 륜	○ 200% 이하	
		높 이	○ 4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	
		배 치	○ 별표2의 B	
		형 태	○ 별표3의 B	
		색 채	○ 별표4의 B	
		건축한계선	○ 종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	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⑥ 공동주택용지(C-1: 연립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C-1	53-2 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 C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 C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40% 이하	
		용 적 륜	○ 120% 이하	
		높 이	○ 4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	
		배 치	○ 별표2의 C	
		형 태	○ 별표3의 C	
		색 채	○ 별표4의 C	
		건축한계선	○ 17m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 지정	

⑦ 공동주택용지(D-1: 아파트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D-1	53-1, 69-1, 70, 93-1, 94, 101, 102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D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D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30%이하	
		용 적 륜	○ 250%이하	
		높 이	○ 20층 이하	
		배 치	○ 별표2의 D	
		형 태	○ 별표3의 D	
		색 채	○ 별표4의 D	
		건 축 한 계 선	○ 12~17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m ○ 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5m	

⑧ 공동주택용지(D-2: 아파트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D-2	78-1, 80-1, 108-1 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D-2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D-2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30%이하	
		용 적 륜	○ 250%이하	
		높 이	○ 15층 이하	
		배 치	○ 별표2의 D	
		형 태	○ 별표3의 D	
		색 채	○ 별표4의 D	
		건 축 한 계 선	○ 12~17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m ○ 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5m 단, 주된 개구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	

⑨ 공동주택용지(D-3: 아파트-KAL아파트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D-3	46-2BL	용도	허용용도	○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			불허용도	
		건 폐 율		
		용 적 률		
		높 이		
		배 치		
		형 태		
		색 채		
		건 축 한 계 선		

⑩ 상업용지(E-1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E-1	72-1, 74-1, 97-1, 99-1BL	용도	허용용도	○별표1의 E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별표1의 E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70%이하	
		용 적 률	○330%이하	
		높 이	○3~5층(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)	
		배 치	○별표2의 E	
		형 태	○별표3의 E	
		색 채	○별표4의 E	
		건 축 한 계 선	○1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m ○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5m	
벽 면 지 정 선	○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: 1.0m			

⑪ 상업용지(E-2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E-2	71, 73, 75, 95, 96, 98, 100BL	용 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E-2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E-2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70%이하	
		용 적 률	○ 550%이하	
		높 이	○ 5~8층(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)	
		배 치	○ 별표2의 E	
		형 태	○ 별표3의 E	
		색 채	○ 별표4의 E	
		건 축 한 계 선	○ 1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m ○ 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5m ○ 4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3.0m	
		벽면지정선	○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: 1.0m	

⑫ 학교용지(F-1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F-1	28, 78-2, 78-3, 88, 109-1BL	용 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F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F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30%이하	
		용 적 률	○ 100%이하	
		높 이	○ 5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한 계 선	○ 12~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~2.0m ○ 소음에 지장이 있고, 주된 개구부가 없을 경우는 3m ,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0m	

⑬ 공공청사용지(G-1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G-1	69-2, 79-1, 80-3, 80-4 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 G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 G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○ 60% 이하
		용 적 륜		○ 250% 이하
		높 이		○ 5층 이하
		배 치		-
		형 태		-
		색 채		-
		건축한계선		○ 17~20m 도로변: 1.0m

⑭ 주차장용지(H-1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H-1	74-2, 97-2, 99-2 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H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H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○ 90%이하
		용 적 륜		○ 1,500%이하
		높 이		○ 28m이하
		배 치		-
		형 태		-
		색 채		-
		건축한계선		○ 10~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m

⑮ 체육시설용지(I-1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치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I-1	72-2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I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I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70%이하	
		용 적 륜	○ 350%이하	
		높 이	○ 28m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축한계선	○ 10~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m	

⑯ 체육시설용지(I-2)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치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I-2	52-2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I-2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I-2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60%이하	
		용 적 륜	○ 100%이하	
		높 이	○ 2층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축한계선	○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	

- ※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
-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상업용지의 일부 획지에 대해 공동건축을 권장
 -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일부 획지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

3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	계 획 내 용	비 고
	기정	변경		
A-1	1-1, 2, 3, 4, 9, 10, 11, 14, 15, 21, 22, 23-2, 27, 54-1, 54-2, 55, 56, 57, 58-1, 59, 60, 61, 62, 64, 65-1, 66, 67, 79-2, 81-1, 82, 83, 86, 89, 90, 91, 92BL		○ 별표5의 A-1, A-2, A-3, A-4 전면공지, 대지안의 조경	
A-2	5, 24, 63, 68-1, 77-1, 80-2, 85-1, 87, 103-1, 104, 105, 107-1, 108-2BL			
A-3	7, 8-1, 12, 13, 16, 17-1, 30, 31, 32, 33, 34, 35-1, 36-1, 37-1, 38, 39, 40, 42, 43, 44, 47-1, 49, 50, 52-1BL			
A-4	6, 25, 29, 45, 46-1, 48-1, 51BL			
B-1	19, 20, 26, 109-2, 110, 111, 112, 114, 115, 116, 117, 118, 119, 120, 121, 122BL		○ 별표5의 B-1, C-1, D-1, D-2 전면공지, 대지안의 조경	
C-1	53-2BL			
D-1	53-1, 69-1, 70, 93-1, 94, 101, 102BL			
D-2	78-1, 80-1, 108-1BL			
D-3	46-2BL(6LT)		○ 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
E-1	72-1, 74-1, 97-1, 99-1BL		○ 별표5의 E-1, E-2 전면공지, 대지안의 조경	
E-2	71, 73, 75, 95, 96, 98, 100BL			

주) B-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■ 차량 및 주차계획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	계 획 내 용	비 고
	기정	변경		
A-1	1-1, 2, 3, 4, 9, 10, 11, 14, 15, 21, 22, 23-1, 23-2, 27, 54-1, 54-2, 55, 56, 57, 58-1, 59, 60, 61, 62, 64, 65-1, 66, 67, 79-2, 81-1, 82, 83, 86, 89, 90, 91, 92BL		○ 별표6의A 차량 및 주차계획 (도면참조)	-
A-2	5, 24, 63, 68-1, 77-1, 80-2, 85-1, 87, 103-1, 104, 105, 107-1, 108-2BL			
A-3	7, 8-1, 12, 13, 16, 17-1, 30, 31, 32, 33, 34, 35-1, 36-1, 37-1, 38, 39, 40, 42, 43, 44, 47-1, 49, 50, 52-1BL			
A-4	6, 25, 29, 45, 46-1, 48-1, 51BL			
B-1	19, 20, 26, 109-2, 110, 111, 112, 114, 115, 116, 117, 118, 119, 120, 121, 122BL		○ 별표6의 B, C, D 차량 및 주차계획(도면참조)	-
C-1	53-2BL			
D-1	53-1, 69-1, 70, 93-1, 94, 101, 102BL			
D-2	78-1, 80-1, 108-1BL			
D-3	46-2(6LT)		○ 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
E-1	72-1, 74-1, 97-1, 99-1BL		○ 별표6의 E 차량 및 주차계획 (도면참조)	-
E-2	71, 73, 75, 95, 96, 98, 100BL			
I-1	72-2		○ 별표6의 I-1 차량 및 주차계획 (도면참조)	-
I-2	52-2		○ 별표6의 I-2 차량 및 주차계획 (도면참조)	-

주) B-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■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-	도면참조	○ 별표7의 보행자전용도로	-

■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-	원당지구단위계획구역	○ 별표8의 식재, 가로장치물, 조명, 포장 등	-

■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계 획 내 용
공원 · 녹지	공원 · 녹지	<p>○ 근린공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수림 및 지형을 이용한 휴게, 운동공간 위주로 계획하며 기존지형 및 수림의 훼손을 최소화 - 구릉지형 공원으로서 기존수림은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계획수림 - 지구주민을 위한 놀이, 운동, 휴식, 산책을 위한 공간을 조성 - 경계부에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공원의 존재인식 및 아늑한 위요 공간을 형성 <p>○ 어린이공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성, 흥미성, 쾌적성, 유지관리의 용이성,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인근주민의 시설이용 편리 도모가 가능한 놀이공원 계획 <p>○ 근린공원, 어린이공원의 녹지율을 각각 85%, 45%이상 확보</p>
	녹지	<p>○ 완충녹지는 방음효과와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위적 동산(Mounding)의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양호한 수림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식생을 복층 구조화 유도</p> <p>○ 속성수종을 선정,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</p> <p>○ 경관녹지는 개발로 훼손될 기존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목을 녹지대에 이식 처리하여 조기녹화 및 주변 식생과의 조화 도모</p>

■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- 교통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,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,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
-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
-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
라. 건축물의 용도·형태·배치 등에 대한 계획: (별표참조)

- 【별표1】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
- 【별표2】 건축물 배치계획
- 【별표3】 건축물 형태계획
- 【별표4】 건축물 색채계획
- 【별표5】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- 【별표6】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
- 【별표7】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
- 【별표8】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

【별표1】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(변경없음)

구분	허용용도	불허용도	건폐율(%이하)	용적률(%이하)	높이
A-1	○ 단독주택 ○ 종교시설 (타종 및 확장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) ○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○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50	3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A-2	○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-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,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/10이하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80	3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A-3	○ 단독주택 ○ 종교시설 (타종 및 확장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) ○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○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00	2층 이하
A-4	○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-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,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/2 이하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20	2층 이하
B-1	○ 단독주택 ○ 다세대/연립주택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) ○ 종교시설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200	4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C-1	○ 연립주택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)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40	120	4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D-1	○ 공동주택 중 아파트 (주택법 적용)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장(제실)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250	20층 이하
D-2	○ 공동주택 중 아파트 (주택법 적용)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250	15층 이하
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			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D-1 용도에서 허용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(제실)은 53-1가구 10획지에 한하고, 53-1가구 10획지의 허용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(제실)에 한함.

구분	허용용도	불허용도	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		전층 불허용도	1층 전면불허용도			
E-1	○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(단독, 공동, 주상복합) ○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○ 공장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) ○ 자동차관련시설 (주차장 제외) ○ 자원순환 관련 시설 ○ 교정 및 군사시설 ○ 발전시설 ○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○ 장례식장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 ○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○ 묘지 관련 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육점, 철물점, 난방, 배관, 페인트, 세탁소, 연탄배급소, 장의사, 목공소, 간판업, 염색, 고물상, 건축자재, 알미늄샷시업 등 <p>※ 단, 정육점,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</p>	70	330	3~5층
E-2	○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(단독, 공동, 주상복합) ○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○ 공장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) ○ 자동차관련시설 (주차장 제외) ○ 자원순환 관련 시설 ○ 교정 및 군사시설 ○ 발전시설 ○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○ 장례식장 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 ○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○ 묘지 관련 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육점, 철물점, 난방, 배관, 페인트, 세탁소, 연탄배급소, 장의사, 목공소, 간판업, 염색, 고물상, 건축자재, 알미늄샷시업 등 <p>※ 단, 정육점,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</p>	70	550	5~8층

구분	허용용도	불허용도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F-1	○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(단, 유치원은 제외)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100	5층이하
G-1	○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우체국,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○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250	5층이하
H-1	○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90	1500	28m이하
I-1	○ 운동시설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70	350	28m이하
I-2	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00	2층이하

※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

【별표2】 건축물 배치 계획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배치
단독 주택 용지	A-1 A-2 A-3 A-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기 위해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(단,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적용) ○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○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
공동 주택 용지	B-1 C-1 D-1 D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○ 광로변은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를 권장 ○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유도 - 12m, 17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- 1m, 20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- 1.5m ○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
	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 용지	E-1 E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○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 ○ 1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- 10m, 20m, 40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각각 1.0m, 1.5m, 3.0m 지정 ○ 보행자도로변 양측에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벽면한계선을 1m (1층에 한함)를 지정
공공 청사	G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,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○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(건축한계선: 1m)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【별표3】 건축물 형태 계획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
단독주택용지	A-1 A-2 A-3 A-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(지붕면적의 70%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)을 설치토록 권장하며, 경사지붕의 구배는 3/10 ~ 7/10 ○ 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지양하며, 가압급수 방식으로 권장 ○ 담장 및 대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장 및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담장 1.2m, 대문 1.8m 이하로 규제 -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○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(외벽 색상은 원색사용 지양) ○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○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(권장) ○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는 측면벽을 이용(권장)
공동주택용지	B-1 C-1 D-1 D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○ 지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- 경사지붕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 -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/10 ~ 7/10 -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○ 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.2m이하 설치 ○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는 측면벽을 이용(권장)→B1용도에 한함
	D-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용지	E-1 E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면형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○ 건축물의 입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서터는 벽면의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

【별표4】 건축물 색채 계획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건축물의 색채
단독주택용지	A-1 A-2 A-3 A-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(강조색은 가능) 저채도 색채를 사용 ○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○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(단 강조색은 가능) ○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
공동주택용지	B-1 C-1 D-1 D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랜드마크(Landmark)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○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○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
	D-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용지	E-1 E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, 원색의 사용을 금함 (강조색은 가능) ○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※ 색채는 파랑, 회색, 녹색,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

※ 색채의 분류

-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,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
- 주조색: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면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%이상을 차지
- 보조색: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~30%를 차지
- 강조색: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%미만을 차지

【별표5】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	
<p>단독주택용지</p>	<p>A-1 A-2 A-3 A-4</p>	<p>전면 공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(화단, 담장, 노상주차장 등)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○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○ 전면공지 지정 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
	<p>대지내 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%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○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	
<p>공동주택용지</p>	<p>B-1 C-1 D-1 D-2</p>	<p>전면 공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(화단, 담장, 노상주차장 등)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○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○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
	<p>대지내 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%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○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○ 12m이상의 도로변(공동주택지내) 대지에서 주택법,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의해 설치하는 조경시설을 지정한 곳은 공공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로변 소공원(쌈지공원 - Pocket park)으로 조성 권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쌈지공원을 조경시설로 조성시 45㎡이상 설치 ○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,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	
	<p>D-3</p>	<p>전면 공지 대지내 조경</p>	<p>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</p>
<p>상업용지</p>	<p>E-1 E-2</p>	<p>전면 공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(화단, 담장, 노상주차장 등)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○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○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○ 40m 도로변 상업지역의 모퉁이변(도면참조)을 공개공지로 확보(규제)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활성화 및 휴게공간, 쉼터 역할을 유도 ○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45㎡이상으로 확보 ○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피로티구조(1층 높이 4m이상),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○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,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
	<p>대지내 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○ 40m도로변의 대단위시설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식재로 수림대 조성 	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【별표6】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용도	도면 표시	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	
단독주택용지	A-1 A-2 A-3 A-4	차량 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○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·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○ 차량출입불허구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차로 측단,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(단,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)
		주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시설 확보 (권장)
공동주택용지	B-1 C-1 D-1 D-2	차량 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○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,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○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,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○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의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,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+자형 교차를 유도
		주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○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○ B-1용도(다세대/연립)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(권장)
	D-3	차량 동선 주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용지	E-1 E-2	차량 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(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) ○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○ 동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
		주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○ 300㎡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
체육시설용지	I-1	차량 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(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) ○ 20m폭 미만의 도로의 각각부의 경우 각 3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
		주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
체육시설용지	I-2	차량 동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○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·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
		주차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

【별표7】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도면 표시	보행동선에 관한 계획	
A-1, A-2 A-3, A-4 B-1, C-1 D-1, D-2 E-1, E-2	보행자 전용도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○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,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○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
D-3	보행자 전용도로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
【별표8】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(변경없음)

구분	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
가로 시설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로시설물의 형태, 크기, 배치,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○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○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○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○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,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
식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○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○ 차도로부터 0.5m, 건물외벽으로부터 2~3m 이상 떨어져 식재 ○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
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-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○ 보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 -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○ 연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- 재료는 화강석(인조화강석)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
조명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로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로의 교통량, 도로폭, 바닥포장의 재질, 건축물의 재질(반사정도) 등을 고려하여 높이, 위치,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 ○ 보행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,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교, 계단,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,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, 도로 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, 옥외광고물법, 「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」 등)
옥외광고물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시행령, 「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」에 따름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54호

영화,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-3,4번지 일원 영화, 진아연립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지정 결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3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

1.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

○ 사업시행 예정구역 조서

지정 구분	사업의구분	구역의 명칭	위치	면적(m ²)	비 고
신설	소규모 재개발사업	영화,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-3, 4번지 일원	4,060.9	

2.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·세대수

○ 기존 주택의 호수·세대수

위치	건축물 명칭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축물수 (동)	총호수/세대수
가좌동 107-3번지	영화연립	2,276.4	1,179.36	2,225.13	3	49/42 (근린생활시설5호, 연립주택 및 점포7호, 연립주택 37호)
가좌동 107-4번지	진아연립	1,784.5	868.35	2,186.56	4	32/32
계		4,060.9	2,047.71	4,411.69	7	81/74

3.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(안)

○ 건축물의 밀도계획(안)

구분	가구 또는 획지구분		구분	내 용	
	도면번호	면적(㎡)			
신설	획지1	4,060.9	용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건축법 시행령』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『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』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, 복리시설
				불허용도	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	건폐율	60% 이하	
			용적률	250% 이하	

○ 용도지역 결정조서(안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4,060.9	-	4,060.9	100.0	-
제1종일반주거지역	4,060.9	감)4,060.9	-	-	-
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4,060.9	4,060.9	100.0	-

※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)

①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”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,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4.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

- 명칭 : 영화, 진아 소규모재개발사업
- 시행기간 : 사업시행 예정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

5. 토지이용계획, 정비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교통계획

- 토지이용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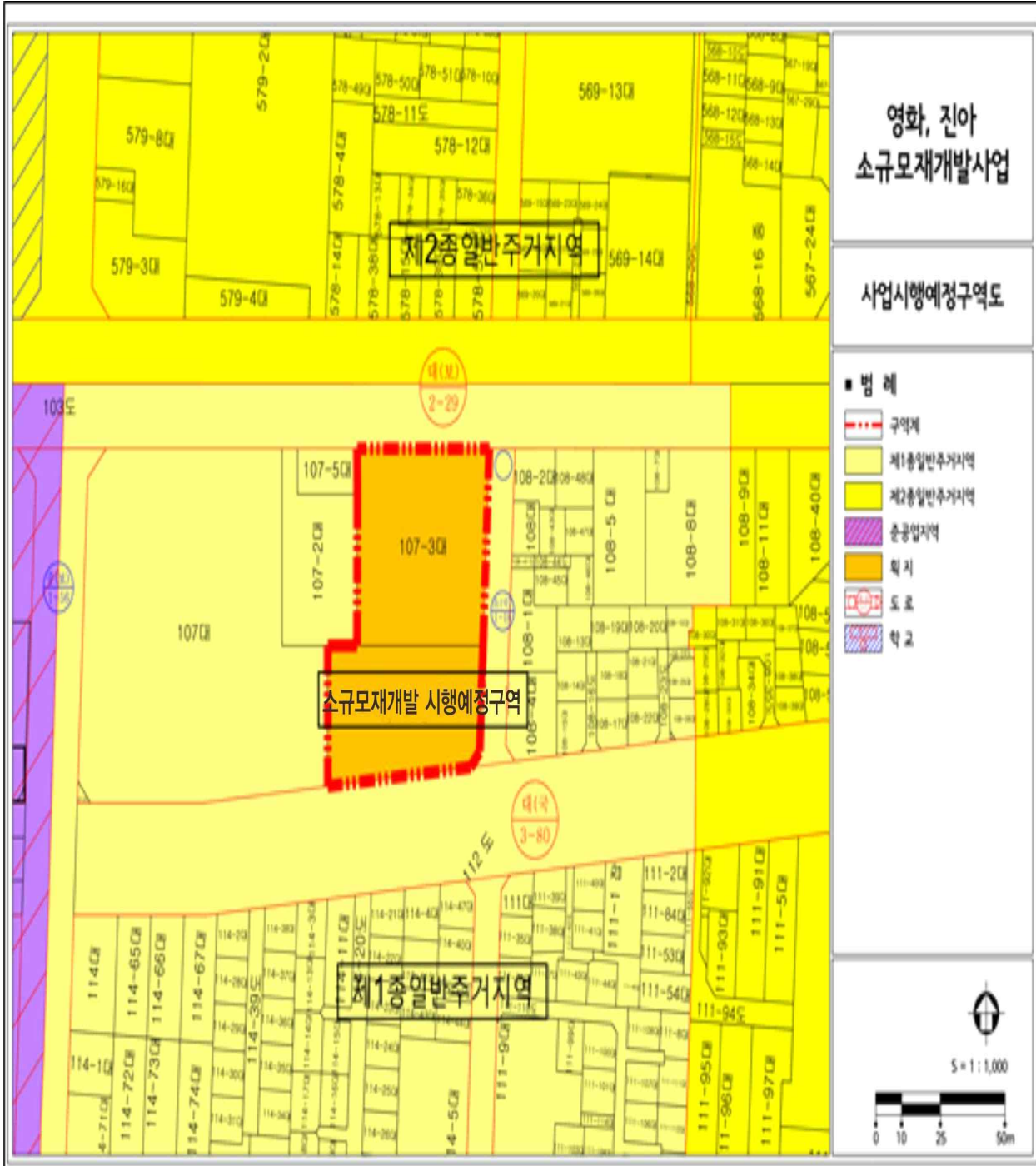
구 분	명 칭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비 고
획지	계	4,060.9	100.0	-
	획지1	4,060.9	100.0	-

- 정비기반시설 : 해당사항 없음
-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8조, 제55조의2)

시설의 종류		위 치	법정기준	계획	비 고
관리사무소		획지1	$\langle 50\text{세대이상} \rangle 10 + (\text{세대수} - 50) \times 0.05$	65㎡	제28조
주민 공동 시설	경로당		$\langle 100\text{세대이상} \rangle 40 + (\text{세대수} - 150) \times 0.1$	87.48㎡	제55조의2
	어린이집		-	87.48㎡	
	작은도서관		33㎡이상	120㎡	
	휘트니스센터		-		
	주민운동시설		500세대 이상		
	어린이놀이터		$\langle 150\text{세대이상} \rangle 200 + (\text{세대수} - 100) \times 0.7$		
	휴게시설		$\langle 300\text{세대이상} \rangle 1 + (\text{세대수} - 500) / 500$	1개소	
합계				$\langle 116\text{세대} \rangle 2.5 = 290\text{㎡}$	359.96㎡

- 교통계획
 -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하여 사업지 동측 도로 소로1-19호선 또는 남측 도로 대로3-80호선등에서 진출입로 계획
 - 진출입로가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

○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 구역도



6. 기타사항

- 행위제한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3조를 준수할것
- 취소사유 :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때에는 해당고시가 있는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지정이 취소가 된 것으로 본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57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(변경)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3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55 외 1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 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3.2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3-27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평창동 393-36	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55 (평창동)	20171025	북항로 서쪽지점부터 약 1,000m 지점 원적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9-20	인천광역시 서구 월곡로 352 (신현동)	20090922	천일마을 생선취터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47-4	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27 (경서동)	20200629	도로진행방향에 금선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	
4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2-28	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43-1 (오류동)	20090922	봉화촌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자연마을의 이름을 따 명명	
5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8-3	인천광역시 서구 풍수대로 879-13 (경서동)	20090710	도로 구간 인면에 풍수대가 있었음	
6	인천광역시 서구 월곡동 298-3	인천광역시 서구 월곡로 8 (월곡동)	20090922	월곡동의 동명일 원 월곡동은 조선시대에 배반으로 몰리곤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창고기 있던 배안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임	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3-27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로240번길 3-1 (가정동, 진명빌라)	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93 (가정동)	20090922	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,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	진명빌라
2	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로240번길 3-1 (가정동, 진명빌라)	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93-1 (가정동)	20090922	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,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	
3	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로240번길 3-1 (가정동, 진명빌라)	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95 (가정동)	20090922	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,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	
4	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로240번길 3-1 (가정동, 진명빌라)	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95-1 (가정동)	20090922	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,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	
5	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로240번길 3-1 (가정동, 진명빌라)	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395-2 (가정동)	20090922	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,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	
6	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로240번길 3-1 (가정동, 진명빌라)	인천광역시 서구 월항로240번길 3-1 (가정동, 진명빌라)	20090922	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,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	